

보도자료



보도	배포시	배포	2024. 12. 18. (수)				
담당부서	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조사기획팀	책임자	팀 장	진세동	(02-3145-7102)		
		담당자	수석조사역	김진구	(02-3145-7198)		

"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소명자료 요청?"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!

■ 소비자경보 2024-38호											
등급		Ž	주의	경고	위	험					
대상	블록체	인	업체	, 가상	자산	사업	급자	등			

소비자경보 내용

- ◈ 금융감독원 직원(팀장)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□ 범인은 **금감원** 가상자산조사국 **직원**(팀장)을 **사칭**하고 금감원 **이메일 도메인 주소**(@fss.or.kr)를 **위조**한 이메일을 사용하였습니다.
- □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 **블록체인**, **가상자산** 관련 **사업자**, **개인 투자자** 등에 메일을 발송하고 **위조된 공문파일***을 첨부하였습니다.
 - *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'자료 통보서', '제출 양식' 등
- □ 금감원이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, 이메일은 **'24.12.18.(수)** 11:03~11:27경을 전후로 **발송**되었으며,
 - **제3자**가 발신자를 **금융감독원**으로 **위장**하여 지난 7.4. 발동한 소비자경보 사례*와 **유사한 수법**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
 - * 소비자경보 2024-23호 : "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요구? 그럴듯한 외형을 갖춘 사칭 메일에 주의하세요!"
- ⇒ 링크 클릭시 **악성코드 감염**, **해킹** 등의 우려가 있고,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제출시 **기밀이 유출**될 수 있으니, **메일 열람** 및 **회신에 신중을**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「범죄수법 1 ● 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는 내용 및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법 등을 명시하여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합니다. □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| (제10조, 제14조 등)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를 우편 으로 발송하였으나, ○ **수취인 불명** 등의 사유로 **반송**되어 **통지문을 이메일**로 보냈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였음 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같이 도용합니다! □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**직원**의 이름과 직위를 **사칭**하고, 해당 직원의 명함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(@fss.or.kr)를 도용 o 금감원에서 **이메일**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**명함** 등 외관을 **실제와** 동일하게 도용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오인토록 하였음 ❸ 국가기관의 공문서식(자료 통보서 등)을 그대로 사용합니다! □ 각종 법령(법인세법, 공직자윤리법 등)에서 별지를 통해 요구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자료제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부기관에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를 유발함 [대응요령] ♠ 금감원에서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! □ 금갂워 홈페이지에서 각 부서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본 사례와 같은 경우 발생시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. ※ 금감원 홈페이지(fss.or.kr) → 금감원소개 → 부서·지원 → 조직도 ②의심스러운 링크 접속, 첨부파일 열람시 점검이 필요합니다! □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메일을 받아 링크에 접속하거나 첨부

파일 열람·제출 시 악성코드 감염, 해킹 등 점검을 당부드립니다.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

사칭 이메일 사례

□ 수신자가 오인토록 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의 실명과 직함을 사칭하였으며, 명함과 도메인 주소(@fss.or.kr)까지 도용하였음

사칭 이메일

김**님 귀하

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 가상자산 조사기획팀입니다.

귀하(귀사)에 대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가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출되어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약칭: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) 제10조(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)와 제14조(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·조치)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안내 통지문을 서면 발송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자료 요청 배경: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
- 2. 자료의 내용

☞ 첨부파일 참조 (모든 자료는 '24,12.18. 기준으로 작성)

3. 관련 법규 :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)

4. 제출 방법 : 이메일로 제출

제출양식을 송부드라오니 2024년 12월 23일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[과태료]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팀장 드림

